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0구합718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21. 8. 26.

판 결 선 고 2021. 10. 21.

주 문

1. 피고가 2019. 5. 14. 원고에게 한 취득세 122,353,480원, 지방교육세 10,450,790원, 농어촌특별세 5,234,7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1999. 12. 28. 설립되어 인쇄회로기판, 반도체 관련 장비, 공정약품, 도금약품의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원고는, 2011. 11. 25. [redacted]공사(분양수탁자 [redacted]공단)로부터 [redacted]시 B 산업단지(이하 'B 산업단지'라고 한다) 내에 위치한 C 로트 3,333㎡(현재 [redacted]시 D 공장용지 3333.9㎡로 지번 및 면적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장용지'라고 한다)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분양대금 납부)

① 갑[redacted]공단, 이하 이 계약서 내에서 같다)은 위 표시 용지를 을(원고, 이하 이 계약서 내에서 같다)에게 분양하고, 을은 아래와 같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구분	약정일	할부원금(원)
잔금	2014. 11. 25.	310,701,425
합계		2,071,342,845

제2조(토지의 사용)

① 을은 갑이 통보한 토지사용가능시기(2013년 11월) 이후 분양대금을 완납하거나, 분양대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미납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갑에게 제출한 경우 토지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사용을 승낙하여야 한다.

④ 토지사용승낙 이후 분양토지 내에서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책임은 소유권이전여부와 무관하게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⑥ 본 분양지역은 연약지반임을 감안하여 건축설계시 을의 부담으로 지반조사 및 기초공사 등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추가약정

3. 을이 제출한 기존 공장 멸실(매각 또는 용도변경) 확약서를 준수하지 않을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은 해지되며, 해지 후에는 재산처분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나. 원고는 2014. 8. 22. 위 가.항 기재 계약의 잔금을 지급하고 2014. 8. 27. [redacted]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을 받았는데, 위 사용승낙서 중 제5조 승낙조건의 다.목은 "공사 착수 전 [redacted]공사와 합동으로 사용토지 인근의 기반시설 및 사용부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자가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합동확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기반시설 및 사용부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9.경 피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지방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취득세 감면을 받고 농어촌특별세 16,569,230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그 무렵 B 산업단지에 관하여는 산업단지공사가 진행 중이었는데, 위 공사는 2015. 9. 24. 준공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 11.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3.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에 건축한 1,109.29㎡ 면적의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9. 3. 13. 원고에게, 2014. 8. 27.로부터 3년 후인 2018. 3. 15.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과세예고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4. 16. [redacted]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redacted]지사는 2019. 5. 8.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2019. 5. 14.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취득세 122,353,480원, 지방교육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10,450,790원, 농어촌특별세 5,234,76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2019. 8. 9.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 6. 11.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14, 16, 23호증, 을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B 산업단지는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인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원고가 2014. 8. 27. 이 사건 공장용지의 잔금을 납부하고 토지사용승낙을 얻을 당시에는 B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었던 상황으로서, 위 공장용지 아래에 물이 고여 있고, 땅이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지도 않아 원고로서는 위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준공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공장건물의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완공된 2015. 9. 24.경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취득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위 2015. 9. 24.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공장건물의 완공 경위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에게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로서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다시 추징할 수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취득일의 확정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을 16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취득일은 2015. 9. 24.이 아니라 2014. 8. 27.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은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원시취득하지 않았고, B 산업단지 조성공사 준공검사일 이전인 2014. 8. 27.에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 공장용지에 관한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8항 단서에 따라 2014. 8. 27.이 취득일이 된다고 보인다.

2) 한국수자원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 사용승낙일인 2014. 8. 27.을 원시취득일로 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다.

3) 이 사건 공장용지 분양계약서 제2조 제4항, 제6항, 위 공장용지 사용승낙서 제5조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공사 착수 전 [redacted]공사와 합동으로 위 공장용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토지사용 승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합동확인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위 공장용지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원고가 위와 같은 합동확인 요청을 하였다는 근거가 없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라. 정당한 사유 여부

1) 인정사실

가) 설계계약 등의 체결과 건축허가

(1) 원고는 2001년부터 [redacted]시 E에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이 사건 공장용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기존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4. 2. 20. 이 사건 공장건물의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4. 위 공장건물 공사 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 3. 3.부터 같은 해 10. 7.까지 F에게 위 설계계약 계약금, 중도금과 위 감리계약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4. 9. 3.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4. 9. 25. 위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전부 개정

(1)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은 2014. 3. 18. 법률 제12490호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위 개정 법률(이하 '구 화학물질관리법'이라 한다)은 2015. 1. 1.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은 2014. 12. 9. 대통령령 제25836호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으로, 구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은 2014. 12. 24. 환경부령 제583호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각 전부 개정되었고, 위 각 시행령 및 시행규칙 역시 2015. 1. 1. 시행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별지와 같다.

한편 구 화학물질관리법은 2015. 1. 20. 법률 제13035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그 개정 법률이 2015. 7. 21. 시행되었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2) 구 화학물질관리법상 장외영향평가서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는데, 위 평가서 수리 업무를 수행하는 화학물질안전원은 2014. 1.경 설립되었다.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시행을 뒷받침하고, 그 내용을 보충하여 주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4-2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58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외벽으로부터 보호대상까지의 안전거리 고시(환경부고시 제2014-251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42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환경부훈령 제1128호)'이 2014. 12. 31.부터 2015. 1. 7.까지 제정되었다.

(3) 2014. 12. 24.부터 2020. 8. 17.까지 G, H, I, J, K, J, L, M, N 등에는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구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하여 "환경부 관계자는 '법이 시행되면 과연 중소기업들이 이를 따라올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이라고 했다", "최종 시행규칙 역시 그동안 수차례 연기됐다가 23일에야 공개돼 혼란을 가중시켰다.",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어려워, 중소기업, 이행 부담 호소", "중소기업 진퇴양난 화학물질 등록의무에 비용·시간 부담 느껴", "도내 유해화학물질 업체들 2019. 12. 31.까지 이행은 무리", "안전기준 79개→413개, 화관법이 불황보다 더 무서워요, 화학물질 사고 영향평가 의무화, 영세 도금업체 3,000곳 중 700곳 불법 업체 될 위기" 등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4)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은 2015. 1. 1.부터 2016. 8. 31.까지 2,185건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접수하였다.

다)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설계 변경 등

(1) 원고는 2015. 6. 24. 소속 직원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에 따른 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내책자를 교부하였고, 그 무렵 [redacted]공단을 통하여 [redacted]장관에게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강화에 따른 개선 건의 사항을 제안하였으며, 2015. 7. 15.부터 2016. 3. 25.까지 소속 직원 O, P, Q 등으로 하여금 R센터에서 진행한 국내외 환경규제 대응 관련 교육수요조사를 위한 워크숍, [redacted]도에서 진행한 2015년도 유해화학물질 사고예방 안전교육(장외영향평가 전문교육 과정), S협회에서 주관하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일반과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 취득과정)',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맞춤형 현장 컨설팅,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주관한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 교육, 대전 인재개발원에서 진행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자교육, 구 화학물질관리법상 신설된 화학물질 정보공개제도 설명회 등에 참석하게 하였다. Q은 2016. 4. 1. 원고의 직원들에게 화학물질관리법상 강화된 규제에 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2)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 1. 1. 전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5. 7. 8. B 산업단지에 관한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지정악취물질과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원료 등을 사용하는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환경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사전협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입주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3. F을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착공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청서 연기사유란에는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인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물질관리법의 조기정착 및 관련 업체 지원을 위하여 2015. 4. 9., 2016. 1. 14.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였고, T 주식회사(이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T'이라 한다)는 2016.경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5)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10. 13.까지 U 주식회사, V 주식회사, T으로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컨설팅 용역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다.

(6) 원고는 2015. 10. 20. T과 사이에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8.부터 수회에 걸쳐[1] T과 위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미팅을 가졌으며, 2015. 11. 2.부터 2016. 3. 7.까지 T에게 위 용역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다.

위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T은 2016. 1. 19.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원고의 귀책에 의한 자료 제공 지연 기간은 위 의무 제출기간에서 제외되며, 잔금 지급 기일은 '장외영향평가서 적합 판정 후 설치 검사 및 영업(변경)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다.

(7) 원고의 직원 W은 2015. 12. 31. 화학물질안전원에게 도금액 제조 및 피막처리 공정을 처리하는 2공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16. 9. 22.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위 제출에 관한 보완·조정을 요청 받고, 2016. 10. 27. 위 요청사항을 보완하였으며, 화학물질안전원은 2017. 7. 5.경 원고에게 위 장외영향평가서가 적합함을 통보하였다.

(8) T은 용역계약서의 제출기한까지 이 사건 공장건물에 관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수회에 걸쳐 T에게 그 제출을 독촉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늦으면 우리 회사 망한다.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1) 2015. 10. 28. 작성된 회의록에 따르면, 원고와 T은 위 회의록 작성 이후 주 2회 미팅을 가지도록 되어 있고, T의 임원 X는 이 법정에서 '원고 측과 일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하였다. 원고는 수회에 걸쳐 T과 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미팅을 가졌고, 그 과정에서 2016. 12. 26. T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약품 사용량 및 물질 확정되면 2차 미팅 일정 협의 후 진행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9) 원고는 2017. 6. 7. T 및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 건축에 관한 3자 미팅을 갖고, 원고의 직원 P은 2017. 6. 13.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T의 이 사건 공장건물 설계변경에 관한 컨설팅이 완료되는 대로 F에게 이를 전달할 것임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7. 6. 20. F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건물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에도 수회에 걸쳐 2017. 8. 25.까지 T으로부터 위 공장건물 중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사항을 전달받아 이를 F에게 전달하고 다시 F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T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반복하였다. 원고는 2017. 7. 13.부터 2018. 8. 18.까지 F에게 설계계약(변경계약 포함) 및 감리계약에 따른 모든 대금을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하였다.

(10) 원고는 2017. 6. 22.부터 같은 해 9. 27.까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Y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3,61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11) T은 2017. 7. 27. 화학물질안전원에게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화학물질안전원은 2018. 11. 21.경 원고에게 위 장외영향평가서가 적합함을 통보하였다.

(12) 2017. 9. 30.자 Z 보도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AA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30%가 넘는 숫자가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를 기다리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에는 각 서류에 대한 심사를 시작한 후 대기가 이어져 매년 접수된 양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심사가 지연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외영향평가서는 4,685건이 접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수되 1,585건(33.8%)이 심사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화학물질안전원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moe_nics)의 2020. 2. 21.자 포스팅에는 "그간 심사인력의 부족, 심사물량 폭증 등으로 만성적인 심사평가 지연이 이어져 왔었으나, 2015년 개원 이래로 접수된 17,500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심사정상화는 2018년~2019년초 심사인력의 대폭적인 확충과 심사방식 효율화 등의 다양한 노력을 통해 달성한 결과입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착공 및 완공

(1) 원고는 2017. 8. 23.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 공사를 준공예정일 2017. 11. 30., 공사대금 1,452,000,000원으로 하여 도급 주었는데, 위 도급계약서에는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제조 기계설비와 중복되는 공사기간은 연장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 2017. 9. 4. 이 사건 공장건물 공사가 시작되었고, 원고는 2017. 9. 12. T에게 용역계약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2017. 9. 29. 피고로부터 건축허가 중 일부 사항에 관하여 변경 허가를 받았다. 위 공사는 2018. 3. 15. 완료되었다.

(3) 원고는 2017. 12.경 주식회사 AC 중개법인에게 기존 공장의 매도를 의뢰하여 2018. 8.경 주식회사 AD에게 기존 공장을 매도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공장건물 완공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 공장건물 사용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가 2014. 9. 3. 피고에게 제출한 건축허가 배치도와 2017. 9. 29. 변경 허가 당시의 배치도를 비교해 보면, 이 사건 공장용지 중 미사용 면적이 907.72㎡ 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내지 10, 12, 13, 17 내지 22, 24 내지 27, 29호증,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을 4, 12, 13, 19, 20, 22, 24, 25, 26호증의 각 기재, 증인 X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은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가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한 이래 현재까지 이 규정이 이어져 오고 있다.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공장 운영 등의 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단기간 내에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산업 활동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함으로써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노리는 행위나 세제상의 혜택만 활용하고 산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20. 3. 26. 선고 2017헌바527 결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위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토지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를 포기한 경우는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참조). 나아가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는 그 감면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그 용도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토지를 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4. 28.자 2016두32251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갑 11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하게 된 동기, ② 위 공장용지 분양계약에 따르면 원고가 기존 공장을 매각하지 않을시 분양계약이 해지되는 점, ③ 이 사건 공장용지에 관한 설계변경 계약이 체결된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점, ④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이 지연될수록 원고는 추가 설계변경 비용·각종 금융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반대로 위 공장건물 신축 기한이 앞 당겨질수록 기존 공장의 매각을 통해 각종 금융 비용의 수월한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일부러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을 지연하거나 게을리 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리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입법 목적 중 토지 취득자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게 조속한 공장건축과 영업 착수를 독려하는 목적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입법 목적은 '기업이 생산설비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줌으로써 신규투자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도모하며,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다른 용도로 부동산을 전용하거나 매각하여 투기를 조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보이는데,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 및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 완공 후 현재까지 이 사건 공장용지를 본래 취득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용지를 전용하거나 매각하여 투기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공장용지와 공장건물의 규모 및 사용 용도, 아래에서 살펴보는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을 완공하는 데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 ① 전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기존 영업 허가제를 내용적으로 모두 강화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법령이 제정된 경우에 준할 정도로 화학물질에 대한 설비 및 관리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와 관련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의 구조(내진설계, 화학물질취급시설과 저장시설건물 간의 거리 등), 재료, 배관, 밸브, 전선관, 출입문의 종류 등 구체적인 내용 형성은 2014. 12. 9.부터 2015. 1. 7.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과 각종 고시 등의 제정으로 인해 비로소 이루어진 점, ② 위와 같은 내용,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 개정된지 약 반 년 만에 일부 개정을 한 사정, 전부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이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에 이르는 경과조치에 관한 유예기간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둔 사정 및 위 개정 이후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어 온 화학물질관리법 이행의 어려움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등을 고려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규제 강화는 당시 원고를 포함한 관련 업체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왔고, 위 업체들은 유예기간을 준수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 한정하여 그 유예기간을 살펴보더라도 원고는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 제3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에 관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완공에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었다.

그리고 ① T이 원고와의 용역계약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기한을 현저히 넘겨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점, ② 원고가 신축하려는 이 사건 공장건물의 설계 및 구체적인 공장 설비를 확정하려면 장외영향평가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이 지연되자 이 사건 공장건물의 설계변경 및 착공 역시 순차적으로 지연되었고, 특히 위 설계변경은 원고가 AB에게 위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 준 이후인 2017. 8. 25.까지도 계속된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화학물질관리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됨에 따라 2016.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전문기관으로 지정된 T은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화학물질안전원 역시 심사물량 증가, 심사위원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장외영향평가서 심사에 관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던 점, ④ T의 임원 X는 이 법정에서 '화학물질관리법이 갑자기 제정되다 보니까 사업장에서 법령 숙지를 제대로 못함은 물론이고, 화학물질안전원의 심사위원조차도 이 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의 직제표에 있는 심사위원 숫자가 굉장히 적었고, 검토신청서 반려 등으로 인해 심사가 지연되었다. 당시 T과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에 관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70~80개 정도 있었는데, 장외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영향평가서를 접수하는 데에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기본적으로 지연되었고, 원고처럼 약 1년 6개월 정도 지연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완공에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역시 있었다.

나아가 위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의 정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들 및 이 사건 공장건물의 착공 및 완공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그 장애정도는 작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탓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사정으로 이 사건 공장건물의 완공이 늦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상 원고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1년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건물의 완공은 약 7개월 정도 지연된 점, ② 원고는 구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분양계약 잔금기일에 선행하는 잔금지급, 그리심 디자인과의 설계·감리계약 체결 및 그 대금지급, 건축허가 신청 등 이 사건 공장건물 완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후에도 각종 교육 등 프로그램 참여, B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등에 관한 용역계약 체결과 그 대금지급,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위한 T과의 수회에 걸친 미팅과 독촉, 설계변경, 이 사건 공장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등 같은 맥락의 노력을 한 점, ③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완료 이전에 T에게 위 평가서와 관련된 용역계약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비용과 시간 등의 측면에서 T과의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공장건물 완공에 필요한 일부 절차를 즉시 또는 일괄하여 밟지 아니하고 시차를 두어 진행하였더라도 이 사건 공장용지의 취득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완공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파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할 때 원고는 일련의 필요절차를 진지하고 꾸준하게 밟아 나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정부가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에 앞서 2013년 하반기에 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환경부에서는 2014. 2. 19.부터 2014. 4. 21.까지 환경부 공고 제2014-58호, 제2014-59호, 제2014-225호 및 제2014-226호로 두 차례에 걸쳐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할 당시 2015. 1. 1. 시행되는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따라서 강화되는 구 화학물질관리법 등에 대처할 수 있었던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입법예고는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전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여 그 예고 내용과 반드시 동일한 내용으로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아닌 점, ② 장외영향평가 작성 자격, 장외영향평가 작성 전문기관 지정 현황 및 원고가 T 외에도 여러 업체로부터 위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의 견적서를 받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원고가 스스로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올바른 해석기준을 정립하여 필요한 설비를 파악하고 해당 설비에 필요한 설계변경 사항까지 모두 예측하여 미리 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무리인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의하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되고, 착공 이전에 그에 관한 적합통보가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데, 이 사건 공장건물의 착공은 이 사건 공장용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9. 4. 비로소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공장건물 완공 지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그러나 ①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장건물의 설계변경에 영향을 미치고, 위 설계변경으로 인해 위 공장건물 도급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므로, 형식적으로만 장외영향평가서를 접수한 후 위 공장건물 건축에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위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공정변경에 따라 그만큼 완공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설계에 따른 건물을 지어본들 이 사건 공장건물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게 되고, 비용 및 시간의 측면에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무용한 건물 건축과 철거 및 재건축의 과정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착공연기 신청서의 연기사유란에 '회사 내부 사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완공된 이 사건 공장건물의 면적이 애당초 건축허가 받은 면적에 비해 좁아 그 차이만큼은 이 사건 공장용지를 위 공장건물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있어서도 원고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착공연기 신청서 제출 시점 및 그 전후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F에게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이라는 사유를 설명하면서 위 신청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F은 착공 연기사유에 관하여 별다른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채 임의로 연기사유란에 '회사 내부 사정'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공장건물의 건축허가가 일체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피고가 문제 삼는 이 사건 공장용지 면적 부분을 살펴보더라도 이것이 이 사건 공장건물의 용도에 사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가 2015. 12. 31. 2공장에 관하여 장외영향평가서를 접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한 이력이 있으므로 원고 자체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접수할 역량이 있었음에도, 원고는 T과 약품 사용량 및 물질에 관하여 서로 이메일을 주고 받은 2016. 12. 26.이 되도록 유해위험화학물질의 목록 및 취급량을 특정조차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 사건 공장건물 완공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증인 X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공장에 대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역시 T이 맡아서 하였으나, 단순히 그 접수를 원고 직원이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관리에 관한 규정(2016. 1. 21. 환경부훈령 제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위와 같은 전문성과 원고가 2015. 12. 31. 까지 구 화학물질관리법에 관하여 받은 교육 등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5. 12. 31. 당시 그러한 전문성을 자체적으로 구비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는 2017. 2. 15. T에게 대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 용역을 발주하여 2017. 4. 7. 대기·폐수 배출시설설치 신고가 수리되었는데, 원고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보다 간이한 것으로 보이는 위와 같은 신고절차에서조차 그 용역을 T에게 발주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자체적으로 장외영향평가서를 접수할 역량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따라서 원고가 2016. 12. 26.까지 유해위험화학물질의 목록 및 취급량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가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별지

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⑧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사준공인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허가일 또는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구 화학물질관리법(2014. 3. 18. 법률 제1249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3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조정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장외영향평가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하여 작성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영되어야 한다.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장외영향평가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5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41조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위해관리계획서

▣ 구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2014. 12. 24. 환경부령 제583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9조(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공사 착공일 30일 전에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이하 "장외영향평가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하여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동일 사업장 내의 취급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2. 사업장 부지 경계로 취급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3.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는 경우

②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검토신청서에 별표 4 제1호가목·나목 및 같은 표 제3호의 내용만 작성한 장외영향평가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취급시설의 위험도(공정위험성 및 사고가능성에 따라 고위험도·중위험도 및 저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여부 등을 적어 별지 제3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신청서와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보완·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조정 필요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조정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검토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제583호,2014.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구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지정· 관리에 관한 규정(2016. 1. 21. 환경부훈령 제1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자격요건)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1-12-21

1. 환경·안전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기술사로서 화학물질 안전·환경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관련 현장 경력·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갖출 것
2.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업무와 관련하여 배상액 5억원 이상의 책임보험에 가입할 것
3. 그 밖의 별표 1에서 정하는 전문기관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을 갖출 것